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이창열 의원
- 제안일자 : 2025. 11. 11.
- 회부일자 : 2025. 11. 18.
- 상정일자 : 2025. 11. 25.

### 2. 제안이유

-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혜택의 범위와 수준을 명확히 하고 우대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우대사항 및 감면범위 구체화(안 제7조)
- 우대항목 추가신설(안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

## 4. 검토의견

### 가.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주민의 복지 증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나. 입법의 취지

-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우대사항과 감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7조(우대)에서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경비 감면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우대항목을 추가 신설함.

## 5.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부칙에 있던 감면 규정을 본칙에 통합하여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혜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우대항목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 차. (생략)
3. ~ 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